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 50 민사부

#### 결 정

사 건 2024카합20635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채 권 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원, 이숙미, 이수균, 공지희, 양병헌  
채 무 자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해용, 김희중, 홍민영, 김이경, 이지은

#### 주 문

1. 채무자는 2024. 5. 31. 소집될 주식회사 C의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 포함)에서 별지 기재 주식으로 '사내이사 A 해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20,0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신청 취지



주문 제1항 및 채무자가 주문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30,000,000,000원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이자, C의 발행주식총수 3,220,000주 중 573,160주(지분비율 17.8%)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채무자는 C의 발행주식 2,576,000주(지분비율 8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채권자는 2019. 1.경 채무자의 전신(前身)인 주식회사 D에 '최고 브랜드 책임자(CBO)'로 입사하였다가, 2021. 11. 2. C가 설립되면서 C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무렵 채무자는 C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채권자, 채무자, C는 2021. 11. 11.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업무협약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① C 발행주식총수의 10%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 ② 채권자가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C 발행주식을 채무자에게 C 평균 영업이익의 13배로 매각할 수 있는 권리, ③ 채권자가 C 발행주식총수의 5%에 일정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정된 금원을 상여금으로 지급받거나 C가 상장되는 경우 위 상여금에 갈음하여 추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각 부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C 소속 걸그룹인 "E"가 F 데뷔하였다. E는 데뷔 직후부터 상당한 인기를 얻었고, C는 2022년 매출액 약 186억 원 및 영업손실 약 40억 원, 2023년 매출액 약



1,102억 원 및 영업이익 약 335억 원을 각 기록하였다.

마. 채무자는 2023. 3. 27.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보유한 C 발행주식 중 573,160주(지분비율 17.8%)를 1주당 6,522원(액면가의 약 1.3배)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채권자, C 등과 주주간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제2조 C의 경영 등에 관한 사항

### 2.1 대표이사 및 이사 선임

- (a) 채권자가 정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C 설립일인 2021. 11. 2.부터 5년의 기간 동안 C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C의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c)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 대표이사 및/또는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자는 대표이사 및/또는 사내이사의 지위에서 지체 없이 사임하도록 한다.
1. 채권자가 고의·중과실로 C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채권자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채권자가 C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임이나 횡령, 기타 위법 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3조 업무협약의 해지 등

- 3.1 채무자, C 및 채권자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2021. 11. 11.자 업무협약을 해지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 업무협약은 채권자 등과 채무자 사이의 2023. 3. 27.자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일에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제5조 채권자의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 5.1 채권자는 C의 설립일 기준 3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채권자가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C 발행주식 중 75%에 상당하는 수량의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해당 주식을 매수할 것(이하 "풋옵션"이라 한다)을 서면으



로 청구할 수 있다.

5.3 채권자가 매수인지정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채권자와 지정매수인 사이에 아래 각 항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③ 1주당 매매대금: (풋옵션을 행사한 날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직전 2년의 사업연도에 대한 C의 감사보고서상 C의 영업이익의 평균액 x 13.0 - 풋옵션 행사통지일 기준 C의 금융기관차입금)/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날의 C 총 발행주식 수

## 제10조 확약사항

### 10.3 채권자의 확약사항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아래와 같이 확약한다.

- (a) 채권자는 C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서 C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C 및 기타 채무자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c) 채권자는 C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 및 여하한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e) 채권자는 C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 5년의 기간 동안 C에 재직하여야 하며, 위 기간 및/또는 본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채무자 및 C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직·간접적으로(특수관계인을 통하는 것 포함) (i) 국내·외에서 채무자, C 및 그 계열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이거나 유사한 사업(이하 "경업금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거나, (ii) 경업금지 대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신설하거나, (iii) 경업금지 대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지분 투자 또는 자금 대여를 하거나, 합병하는 행위 또는 (iv) 경업금지 대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사업자 또는 법인 등에게 대가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자문, 컨설턴트, 고문 등을 포함하여 여하한 형태로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 계약의 효력 등

### 11.2 해지

어느 당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귀책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a) 본 계약을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다만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이 가능할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고도 14일 이내에 당해 위반사항을 치유하지 않는 경우)

## 제12조 기타

### 12.9 비밀유지

각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 및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a) 본 계약의 존재 및 내용, (b) 본 계약과 관련한 협상 내용, (c)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 당사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성이 있는 모든 정보와 자료 일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는 (i)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ii) 법률상 정부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경우, (iii)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법 절차 또는 행정절차에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 (iv) 공개되는 정보에 관하여 본 조에서 규정하는 것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각 당사자의 본 계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대리인, 자문사 등 관련자에 국한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본건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채권자는 2023. 12.경부터 채무자에게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0.3조 제(e)항에 규정된 경업금지약정,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5.3조 제3항에서 풋옵션 행사 시 1주당 매매대금을 C 영업이익의 13배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 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수정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G경까지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수정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사. 채무자의 다른 자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소속 걸그룹인 'I'이 G 데뷔하였다.

아. 채권자는 2024. 4. 3. 채무자와 H에, 'I의 컨셉, 스타일링, 안무 등이 E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다. 위 이메일에는 E 구성원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채권자에게 'E와 I의 유사성 및 채무자의 E에 대한 차별



대우에 우려를 표하는' 내용의 2024. 3. 31.자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H의 대표이사는 '답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데, 답변을 잘 준비하려다 보니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자. 채권자는 2024. 4. 16.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음반 밀어내기(음반유통사나 해외 자회사를 이용하여 음반의 초동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 채무자의 E에 대한 차별대우, I과 E의 유사성" 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재차 발송하였다.

한편, H은 같은 날 채권자에게 'I이 E의 안무 등을 따라하지 않았고, E를 이용하거나 E와 비교하는 마케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메일로 보냈다. 또한 채무자도 같은 날 C 측에 'C 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고, 채무자가 E 구성원들의 법정대리인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차. C의 감사는 2024. 4. 22. C에 'C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채무자의 감사위원회도 같은 날 C에 '채권자를 포함한 C의 경영진이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C의 기업가치를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어 C의 영업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채무자는 같은 날 채권자에게 C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하였고, C의 이사회에는 '채권자를 C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의안(이하 '이 사건 의안'이라 한다) 등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청구하였다.

카. 채무자는 2024.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의안 등을 회의 목적사항으



로 하는 C의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비합1037호).

타. 채권자는 2024. 4. 25.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위 기자회견에서 한 채권자의 발언에는 'I 또는 H이 E를 모방하고 표절하였다'는 내용,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0.3조 제(e)항의 경업금지약정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파. 채무자는 2024. 4. 25. 채권자와 C의 사내이사인 J을 '업무상배임'의 혐의사실로 고발하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용산경찰서에 제출하였고, 2024. 5. 14.에는 채권자, J, C의 스타일디렉팅팀 팀장인 K를 '업무상배임'의 혐의사실로 고발하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용산경찰서에 추가로 제출하였다.

하. C는 2024. 5.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의안 등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2024. 5. 31. 소집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소집결의에 따라 개최될 예정인 주주총회를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 가. 채권자

1) 채무자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조 제(a)항에 따라 채권자가 2021. 11. 2.부터 5년 동안 C의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C의 주주총회에서 채무자가 보유한 C 발행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채권자를 해임하는 내용인 이 사건 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으로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조 제(a)항 중 '채권자가 정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상법상 이사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이라는 부분은 같은 항에 규정된 의결권 행사 의무에 대한 해제조건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정관, 법령



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상법상 이사 해임사유(이하 '해임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3) 아래와 같이, 채권자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조 제(a)항에 규정된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의 C에 대한 지배권을 박탈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그에 관한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C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 등 법령위반 행위가 될 수 없다.

나) 채권자는 C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E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실행하지 않았다. I이 E를 모방·표절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C의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C에 대한 법령위반 행위가 될 수 없다.

다) 채무자가 문제 삼는 채권자의 행위들로 인해 C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라) 채무자가 유출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들은 C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자가 위 정보들을 외부로 보낸 것으로 인해 C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마) E의 광고 촬영 시 C는 모델출연료만 받게 될 뿐이고 헤어·메이크업·의상의 세팅비용(이하 '스타일링 용역비'라 한다)은 광고주가 별도로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문제 삼는 스타일링 용역비는 애초에 C의 매출이 될 수 없다.

바) 채무자는 J과 J의 채무자 발행주식 매도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고, J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는 C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4) 채권자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조 제(c)항이 정한 사임사유(이하 '사임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아가 이사의 '해임'과 '사임'은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이고,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조 역시 해임사유와 사임사유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사임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채권자를 해임할 수 없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임 불응이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임을 증명하여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1.2조에 따라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해지한다면 채권자를 해임할 수 있으므로, 사임사유가 형해화된다고 볼 수 없다.

5) 채무자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의안에 관하여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해임되는 경우, 채권자는 직·간접적인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명예 등에 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

#### 나. 채무자

1)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C의 정관 제38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조 제(a)항은 '채권자가 3년의 임기를 경과하여 연임할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가 그 연임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된 것일 뿐이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약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2)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조 제(a)항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임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약정이라고 해석할 경우, 채권자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조 제(c)항을 위반하여 사임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를 C의 이사직에서 해임할 수 없게 되는바,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조 제(c)항의 사임에 관한 규정이 형해화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조 제(a)항에 규정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채무자의 의결권이 제한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므로, 채권자가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4) 채권자는 채무자의 투자로 설립된 C와 그 핵심자산인 E를 사유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법령, 정관 위반행위를 하였다.

가) 채권자는 C와 E 사이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려 하거나 E 구성원들의 법정대리인들을 부추겨 C와 채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외관을 작출하는 등 C에 손해를 가하거나 C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한 일련의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채권자는 언론과 채무자에 대한 투자자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무자로부터 C의 지배권을 빼앗으려는 일련의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채권자는 스타일디렉팅팀 팀장인 K와 공모하여 C에 귀속되어야 할 매출을 K가 받도록 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다.

라) 채권자는 'E가 브랜드 앰버서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미공개 상태였던 C의 2023년도 실적 정보, C와 채무자의 부서(브랜드시너지사업파트) 사이의 L 이슈에 대한 이메일,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협상 내용' 등 C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였다.

마) 채권자는 J, C의 부사장인 M와 공모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를 위반하여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하였다.

바) 채권자는 채무자의 경영진 및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였다.



5)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조 제(c)항에 따라 C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와 같은 사임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채권자를 해임하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가) 위 4)항에서 본 채권자의 법령, 정관 위반행위로 인해 상장회사인 채무자의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 하락하였고 C의 자산인 E와의 전속계약 관계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 이로써 채권자는 C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 이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조 제(c)항 제1호가 정한 사임사유에 해당한다.

나) 채권자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2.9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차별대우, 밀어내기, 표절' 문제에 관한 허위의 주장을 개진함으로써 채무자 및 그 계열회사에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손해를 끼쳐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0.3조 제(a)항의 확약사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 이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조 제(c)항 제2호가 정한 사임사유에 해당한다.

다) 채권자는 C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임행위,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행위, 채무자 및 그 계열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고, 이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조 제(c)항 제3호가 정한 사임사유에 해당한다.

라) 채권자는 주요 경영판단을 무속인에게 의존하고 있고, 부적절한 성인지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나치게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채무자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였다. 따라서 채권자에게는 C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존재한다. 이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조 제(c)항 제4호가 정한 사임사유에 해당한다.

### 3. 판단



## 가. 피보전권리

### 1)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조 제(a)항의 해석

가) ①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조 제(a)항은 '채무자는 채권자가 2026. 11. 1. 까지 C의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C의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하여 명확하게 채무자가 보유한 C 발행주식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조 제(a)항은 그와 같은 의결권 행사의무의 예외로서 '채권자가 정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상법상 이사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여 '이사 해임사유'를 언급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조 제(a)항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 10.3조 제(e)항에 따라 5년간 C에 재직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자에게 그 재직기간 동안 C의 대표이사 직위를 보장하여 주기 위한 취지의 약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조 제(a)항은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C의 주주총회에서 채권자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채무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의결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주주의 권리를 해하거나 그 밖에 불공정한 경우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계약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따라서 채무자는 위 약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해임사유가 없는 한 C의 주주총회에서 채권자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 안건에 관하여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그와 같은 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므로 채권자는 그와 같은 의무의 강제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조 제(a)항의 해임사유는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점, 일정한 사유가 부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조 제(a)항에 규정된 해임사유 또는 같은 조 제(c)항에 규정된 사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채권자에게 해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여기서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란 이사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고의의 행위를 말하고, 단순한 임무해태는 해임청구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란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에 견줄 정도로 이사가 고의로 법령이나 정관에 심히 위배하여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저버림으로써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나) 구체적 판단

위 소명사실에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의 주장 및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에게 해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채권자가 2023년 말경부터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서 그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E를 데리고 채무자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채무자를 압



박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C의 발행주식을 매도하도록 함으로써 C에 대한 채무자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C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C의 부사장인 M 등과 함께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그와 같은 모색 단계 또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소명되지 않고, 그러한 채권자의 행위들이 채무자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C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① I의 데뷔를 전후하여 대중들 사이에서도 I의 컨셉, 안무, 의상 등이 E의 것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점, ② C와 E 구성원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제5조 제4항은 제3자가 E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C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C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E 구성원들이 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점, ③ C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채권자는 C의 핵심 자산인 E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점, ④ E의 법정 대리인들은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등에서 'E의 법정대리인들이 채권자에게 I의 E 표절 문제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채권자가 E의 법정대리인들을 부추켜 채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한 점, ⑤ 채권자가 I과 E의 유사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채무자에게 보낸 것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0.3조 제(c)항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I의 E 표절'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행위 등을 C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채무자가 문제 삼는 채권자의 행위들로 인하여 C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C의 가치가 저하되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다.

(4) ① 광고계약의 구조상 E의 소속사인 C가 지급받게 되는 금원은 E의 모델료이고, 광고 촬영 시의 스타일링 용역비는 광고주가 별도의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것이며, C가 K에게 E의 광고 스타일링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한 금원이 있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K가 C 이사회의 검직 허가를 통해 외주업체 소속으로 스타일링 용역비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C의 매출이나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K가 수령한 스타일링 용역비를 발생시킨 광고 스타일링에 C의 직원들이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K가 수령한 스타일링 용역비 자체가 C의 손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를 비롯한 C의 이사회가 K의 스타일링 외주업체 검직을 허가하여 K가 E의 광고 촬영 시 발생한 스타일링 용역비를 수령한 것이 채권자의 C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채권자가 외부에 유출하였다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정보들이 C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채권자가 제3자에게 그와 같은 정보를 발송함으로써 구체적으로 C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6) C의 사내이사인 J이 2024. 4. 15. 보유하고 있던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자 발행주식을 매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채권자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경영진이나 채무자의 계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C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3) 채권자에게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위 소명사실에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의 주장 및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사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역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채무자의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 하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가 8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회사에 불과한 C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당연히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C의 자산인 E와의 전속계약 관계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는 사정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소명할 자료도 없다.

나) ① 채권자가 2024. 4. 25.자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내용과 그 정도, ② 이후 언론에 보도된 이 사건 주주간계약 내용의 출처가 채권자라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채권자의 2024. 5. 2.자 입장문에서 언급한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내용은 채무자의 2024. 4. 26.자 입장문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언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2.9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2) 나)의 (2)항에서 본 사정들에다가 채권자가 시정을 요구한 채무자의 E에 대한 차별대우 문제, 채무자의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문제 등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채권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C 또는 채무자나 그 계열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C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서 C에 대한 배임행위 및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조 제(c)항 제3호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C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서 C에 대한 배임행위 또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함은 위 3. 가. 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라) 앞서 본 C의 영업실적 등을 고려해볼 때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채권자에게 C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을 금지시켜야 할 만큼 중대한 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 4) 소결론

이상과 같이 채권자에게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은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 및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에게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조 제(a)항에 따라 C의 주주총회에서 채권자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 안건에 관하여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있다.

#### 나. 보전의 필요성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가 임박하여 채권자로서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2.1조 제(a)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본안소송으로는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채권자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는 경우 채권자는 잔여 임기 동안 C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고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으로 전보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 다. 간접강제



이 사건의 분쟁경위와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주문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300억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나, 채무자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의안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주문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200억 원의 지급을 명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넘는 채권자의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여지 아니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전부 부담하기로 정한다.

2024. 5. 30.

재판장      판사      김상훈

                 판사      조정용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31

판사      장천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31

별지

### 주식의 표시

주주	발행회사	주식의 종류	주식수	지분율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보통주식	2,576,000주	80%

. 끝.